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업정책과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목적	청사 시설물 파손 및 장비 고장 등 신속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제1항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29,775	473,875	432,305	0	41,570	44,100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429,775	473,875	432,305	0	41,570	44,100	
기타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1,570	
청사관리	401-01 시설비	· 청사 옥탑 방수공사	= 41,570	
		: 옥탑 데크 철거 및 방수공사(450㎡*22,500원)	= 10,125	
		: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7,682	
		: 공사관리비 및 폐기물 처리비(3.5톤*300,000원)	= 1,500	
		: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 2,500	
		: 기타경비(현장운영비, 일반관리비 등)	= 9,763	

□ 예산요구 사유

- 청사 옥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건물 내부 및 구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므로, 장마철 이전 방수 공사를 통해 시설을 보호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최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장기적으로 건물 안전성 유지 및 지속적으로 발생 될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옥탑 전체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 예산증감 사유

- 청사 노후화에 따른 옥탑 누수로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소속 직원 및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 2019. 6. : 농업기술센터 본관건물(옥상 및 연결다리 지붕 등) 방수공사 [소요예산:15,865천원]
 - 2020. 4. : 농업기술센터 본관건물 방수공사 하자보수 실시(2층 소장실 벽체 누수)
 - 2020. 7. : 농업정책과 사무실 천장 누수로 인한 자체 보수
 - 임시방편으로 자체 보수 등 진행하였으나, 이후 크고 작은 누수 지속적으로 발생
- 향후 계획
 - 2025. 5. : 청사 옥탑 누수 방수 공사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청사 바닥 및 창호 공사, 청사 조경 유지관리(2회),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 청사 보수 공사
2024	○ 청사 바닥 공사, 청사 조경 유지관리(2회), 청사 보수 공사
2025	○ 청사 냉난방기 구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88,006	367,030	-	20,976	
2024	429,775	360,470	-	69,305	
2025	432,305	136,951	-	295,354	4.2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농업정책과	사업규모	농업기술센터 청사(본관)	2회추경 요구액 (천원)	41,570
부기명 (세부사업)	청사관리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천원)	
위치도					
현장사진	천장 자체 보수(농업정책과 사무실)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7급 안수진	전화	4253
-----	-------	------------	-----	----------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청년농업인 50여 명		
사업목적	영농초기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 1호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23,960	608,400	613,540	0	-5,140	184,440	
국비	296,770	425,880	429,480	0	-3,600	129,110	
도비	0	0	0	0	0	0	
시비	127,190	182,520	184,060	0	-1,540	55,330	
기타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14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영농정착지원금: 5,140,000원 ※ 독립경영 개시일에 따른 연차별 차등지급: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5,140	

□ 예산요구 사유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건실한 경영체로의 성장 유도

□ 예산증감 사유

- 최종 확정 내시 반영하여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2. ~ 2025. 3 : 2025년 신규 사업대상자 모집
 - 2025. 3. : 사업대상자 서면평가 실시
 - 2025. 4. : 사업대상자 면접평가 실시 및 최종합격자 통보
 - 2025. 5 ~ 12.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매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19명 선발 - 6월: 영농정착지원금 141,440천원 집행 - 11월: 영농정착지원금 78,360,000천원 집행
2024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27명 선발 - 6월: 영농정착지원금 237,000천원 집행 - 11월: 영농정착지원금 186,960천원 집행
2025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26명 선발 예정 - 6월: 영농정착지원금 608,400천원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0,000	230,000	-	-	
2024	423,960	423,960	-	-	
2025	613,540	-	-	613,54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8급 이유민	전화	4255
-----	-------	------------	-----	----------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청년농업인 50여 명		
사업목적	청년농업인 선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1호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7,300	6,200	6,000	0	200	-1,100	
국비	3,650	3,100	3,000	0	100	-550	
도비	0	0	0	0	0	0	
시비	3,650	3,100	3,000	0	100	-550	
기타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홍보 비용 등: 200,000원 =	200	

□ 예산요구 사유

- 청년농업인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을 육성
- 청년농업인 대상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농업경영 실태를 확인하고 농업활동 활성화 유도

□ 예산증감 사유

- 최종 확정내시 반영하여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서면평가 실시
 - 2025. 4. :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면접평가 실시
 - 2025. 9. : 신규 청년농업인 대상 정담회 개최
 - 2026. 12. : 2026년도 사업 홍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신규 청년농업인 19명 선발 - 2023년 2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서면평가 추진 - 2023년 3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면접평가 추진
2024	○ 신규 청년농업인 27명 선발 - 2024년 2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서면평가 추진 - 2024년 3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면접평가 추진
2025	○ 신규 청년농업인 26명 선발 예정 - 2025년 3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서면평가 추진 - 2025년 4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면접평가 추진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600	4,233	-	3,367	
2024	7,300	3,700	-	3,600	
2025	6,000	1,902	-	4,098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8급 이유민	전화	4255
-----	-------	------------	-----	----------	----	------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관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1047, 1082번지
사업규모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스마트온실 2동, 시설면적 2,700㎡)		
사업목적	시 소유 공유재산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스마트 온실)의 정수필터 설치 및 유지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식품기본법	제24조 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제1항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30,000	0	0	30,000	30,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0	30,000	0	0	30,000	30,000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관리	401-01 시설비	정수필터 설치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시 소유 공유재산인 스마트온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
- 위치상 해수의 염분, 철분의 영향으로 작물 재배에 부적합해 정수필터 설치를 통한 수질 조절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수질정수필터(R/O필터) 설치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4. : 스마트 온실 시설물 및 장비 점검
 - 2025. 5. ~ 7.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임차인 모집 및 선발
 - 2025. 8 : 정수 필터 설치 및 시설 보수
 - 2025. 8. ~ 12. :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유지 및 관리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해당없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농업정책과	사업규모	스마트온실 2동(시설면적 2,700㎡)	2회추경 요구액 (천원)	30,000
부기명 (세부사업)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관리	사업위치	하성면 석탄리 1047, 1082		
위치도					
현장사진, 제품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8급 송혜린	전화	4254
-----	-------	------------	-----	----------	----	------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기간	2025. 3. 1. ~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소재 농지
사업규모	3,261ha(35,666필지)		
사업목적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98,939	103,816	82,130	0	21,686	4,877	
국비	69,257	65,000	57,491	0	7,509	-4,257	
도비	0	0	0	0	0	0	
시비	29,682	38,816	24,639	0	14,177	9,134	
기타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686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 경정(91,200원*29명*23.2일)-기정(91,200원*29명*30일) ·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 보조원 인건비 : 91,200원*7명*60일	≒ -17,998 ≒ 38,354	
	201-01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 구입 : 경정(588,000원*7개소)-기정(398,000*7개소)	= 1,330	

□ 예산요구 사유

- 농지불법 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전용 여부 조사를 위한 이용실태 조사 보조인력 채용
- 농지정보의 DB자료 및 필지별 농지대장 현행화 연중 추진을 위한 조사 보조인력 채용

□ 예산증감 사유

- 인건비 총액(99,700천원)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61,346천원)와 농지대장 현행화조사 인건비(38,354천원) 사업내역 분리 내시로 시비 부담금 증가
 -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내시(기금 70% : 시비 30%), 농지대장 현행화조사 인건비 내시(기금 50% : 시비 50%), 사무관리비(기금 70% : 시비 30%)
- ※ 2024년 33,823필지(3,276ha) → 2025년 35,666필지(3,261ha)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 농지대장 정비계획 수립
 - 2025. 4. ~ 12. : 농지대장 정비 및 현장조사
 - 2025. 7. ~ :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25. 8. ~ :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대상 등록 및 확정
 - 2025. 9. ~ 11. : 농지이용실태조사 현장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등록
 - 2026. 2. ~ 3. : 농지이용실태조사 최종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사업 추진(20,104필지)
2024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사업 추진(18,766필지)
2025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사업 추진(19,284필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9,263	81,879	-	7,384	
2024	98,939	93,570	-	5,369	
2025	82,130	8,400	-	73,73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이무영	담당자	농업7급 이현철	전화	4263
-----	-------	------------	-----	----------	----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여성농어업인 553명		
사업목적	농촌지역 여성농어업인 보건문화 이용비 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7.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8.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77,920	88,480	92,160	0	-3,680	10,560	
국비		0				0	
도비	23,376	26,544	27,648	0	-1,104	3,168	
시비	54,544	61,936	64,512	0	-2,576	7,39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8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바우처카드 : 경정(200,000원*553명*80%)-기정(200,000원*576명*80%) =	-3,680	

□ 예산요구 사유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 및 문화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바우처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 건강 증진 및 생산성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553명 선정에 따라 경기도 변경 내시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접수
 - 2025. 3.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선정
 - 2025. 4. : 보조금 집행(시 → 농협)
 - 2025. 4. ~ 12. : 선정자 바우처카드 지급 및 사업추진
 - 2025. 12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대상자 227명 바우처카드 지원 (개인당 연 20만원, 자부담 4만원)
2024	○ 사업대상자 487명 바우처카드 지원 (개인당 연 20만원, 자부담 4만원)
2025	○ 사업대상자 553명 선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320	36,320	-	-	
2024	77,920	77,920	-	-	
2025	92,160	88,320	-	3,84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8급 송혜린	전화	4254
-----	-------	------------	-----	----------	----	------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태블릿 26대		
사업목적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의 비대면 인프라 설치를 통한 공무원 및 농업인 편의 증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4,534	14,540	0	-6	14,534	
국비	0	7,267	7,270	0	-3	7,267	
도비	0	2,180	2,181	0	-1	2,180	
시비	0	5,087	5,089	0	-2	5,087	
기타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태블릿 구입 : 경정(559,000원*26대)-기정(559,300원*26대)	= -6	

□ 예산요구 사유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구축에 따른 비대면 인프라(태블릿 터치스크린) 설치
- 읍·면·동 담당자 PC와 연결 사용하여 창구에서 농업인이 별도의 종이 서류 없이 태블릿을 통한 확인 및 서명으로 농림사업 신청

□ 예산증감 사유

- 읍·면·동 및 농정과 태블릿 수요 총 26대로 1대당 559천원(국비50%, 도비15%, 시비35%) 장비 지원 예산 필요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5.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홍보
 - 2025. 6 : 설치 계약체결
 - 2025. 7 ~ 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정과 태블릿 설치
 - 2025. 10. ~ 12. : 비대면서비스(태블릿) 사후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해당없음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농업8급 송혜린	전화	4254
-----	-------	------------	-----	----------	----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소		
사업목적	체험객의 안전한 농촌체험 보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보호를 통해 안전강화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5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육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741	1,872	2,288	0	-416	131	
국비	1,088	1,170	1,430	0	-260	82	50%
도비	0	0	0	0	0	0	
시비	653	702	858	0	-156	49	30%
기타	435	468	572	0	-104	33	자부담2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16	
농촌체험휴양 마을 보험가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비 지원 : 경정(780,000원*3개소*80%)-기정(715,000원*4개소*80%)	= -416	

□ 예산요구 사유

○ 안전한 체험활동 조성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장치 마련 및 관광객 유도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대상 감소(4개소->3개소) 및 국비 부담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3.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시행지침 시달
 - 2025. 4. ~ 10. : 보험가입 수요조사(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25. 11. ~ 12. : 결과보고 및 평가(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대 상 :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관내 마을 ○ 사업량 : 3개소(한강노을빛마을, 매화미르마을, 달뫼마을) ○ 내 용 :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2024	○ 대 상 :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관내 마을 ○ 사업량 : 1개소(한강노을빛마을) ○ 내 용 :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2025	○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84	1,584	-	-	
2024	1,741	1,342	-	399	
2025	2,288	-	-	2,288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상국	담당자	행정6급 김현정	전화	4252
-----	-------	------------	-----	----------	----	------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농업정책과, 읍면동
사업규모	13개소		
사업목적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3,000	45,000	40,000	0	5,000	12,000	
국비	33,000	45,000	40,000	0	5,000	12,000	
도비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등록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 경정(10,040,000원)-기정(5,040,000원)	= 5,000	

□ 예산요구 사유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위원회 심의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5. : 행정경비 사용계획 수립 및 읍면동 재배정
 - 2025. 6. ~ 12. : 사업추진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소요액 : 41,162천원 - 사업내용 : 위원회 수당, 직불금 사무보조원 급여, 기타 사무용품 구입
2024	- 소요액 : 32,945천원 - 사업내용 : 위원회 수당, 직불금 사무보조원 급여, 기타 사무용품 구입
2025	- 34,400천원 읍면동 재배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3,700	41,162	-	2,538	
2024	33,000	32,945	-	55	
2025	40,000	12,413	-	27,587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조민경	전화	4279
-----	-------	------------	-----	----------	----	------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6.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김포농협, 고촌농협, 신김포농협		대표자	김명희, 조동환, 박호연	
사업목적	우량상토 지원을 통한 토양오염 및 병충해 예방으로 건전육묘 생산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탐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5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712,000	693,000	645,230	0	47,770	-19,000	
시비	356,000	346,500	322,615		23,885	-9,500	
자부담	356,000	346,500	322,615		23,885	-9,5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47,770	23,885	23,885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정(상토 3,410원*203,220 포) -가정(상토 3,987원*161,824 포) =	47,770	23,885	23,885	

□ 예산요구 사유

- 벼 못자리 상토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품질 김포쌀 안정적 생산 가능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신청자 및 신청 포대수 증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신김포농협, 김포농협, 고촌농협 ○ 추진실적 : 못자리상토 165,501포 지원
2024	○ 보조사업자: 신김포농협, 김포농협, 고촌농협 ○ 추진실적 : 못자리상토 161,824포 지원
2025	○ 보조사업자: 신김포농협, 김포농협, 고촌농협 ○ 추진실적 : 못자리상토 203,220포 지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660,000	396,000	264,000	658,032	394,819	263,213	1,968	1,181	787	
2024	712,000	356,000	356,000	644,938	322,469	322,469	67,062	33,531	33,531	
2025	645,230	322,615	322,615	-	-	-	645,230	322,615	322,615	4.23.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853ha		
사업목적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으로 농가 비용부담 및 경영불안 해소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65,350	340,272	371,254	0	-30,982	-25,078	
국비	0	0	0	0	0	0	
도비	73,070	102,082	111,376	0	-9,294	29,012	
시비	292,280	238,190	259,878	0	-21,688	-54,090	
기타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98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307-06 보험금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경정(371,254,000원)-가정(340,272,000원) ○ 보험료: 품목, 면적, 개인 할인을 등에 따라 최종 보험료 상이 - 보조비율: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 국비(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에 직접 지원	= -30,982	

□ 예산요구 사유

-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보장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12 : 사업홍보 및 사업비 지급
 - 2025.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699농가 - 집행액 : 516,100천원
2024	- 사업량 : 653농가 - 집행액 : 363,559천원
2025	-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16,100	516,100	-	-	
2024	365,350	363,559	-	1,791	
2025	371,254	-	-	371,254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47ha		
사업목적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등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5,423	21,549	32,897	0	-11,348	-13,874	
국비	14,169	8,619	13,159		-4,540	-5,550	
도비		3,879	5,921		-2,042	3,879	
시비	21,254	9,051	13,817		-4,766	-12,203	
기타	35,423	21,549	32,897		-11,348	-13,874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348	
유기농업 자재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경정(21,549,000원)-기정(32,897,000원)	= -11,348	

□ 예산요구 사유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신청자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1. ~ 12. : 신청 및 접수
 - 2025. 1. ~ 4.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 2025. 5. ~ 12. :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55농가 / 39,427천원
2024	- 44농가 / 32,144천원
2025	- 사업대상자(40농가) 선정 심의의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0,932	39,427	-	11,505	
2024	35,423	32,144	-	3,279	
2025	32,897	-	-	32,897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조민경	전화	4279
-----	-------	------------	-----	----------	----	------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2건		
사업목적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시·군간 상호교류와 인삼산업 발전방안 공동 모색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6,000	0	0	6,000	6,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0	6,000	0	0	6,000	6,000	
기타	0	0	0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201-02 공공운영비	· 고려인삼시군협의회 분담금 : 3,000,000원*2회*1년	= 6,000	

□ 예산요구 사유

- 국내 및 세계 인삼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 각 시·군간 상호교류를 통해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 고려인삼종주국의 위상 확립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인삼산업의 공동발전 도모를 위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편성으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2025.12 :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분담금 3,000천원 납부
2024	- 해당없음
2025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	3,000	-	-	
2024	-	-	-	-	
2025	-	-	-	-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2.9ha		
사업목적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제 등 지원하여 농업환경보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9,563	23,347	9,563	0	13,784	13,784	
국비	0	0	0	0	0	0	
도비	2,869	7,004	2,869	0	4,135	4,135	
시비	6,694	16,343	6,694	0	9,649	9,649	
기타	9,563	23,347	9,563	0	13,784	13,784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784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농자재 지원 : 경정(23,347,000원)-기정(9,563,000원) ○ 품목별 지급단가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 잡초매트 : 320원/㎡,	13,784	

□ 예산요구 사유

- 장기연질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으로 농촌의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 경영 안정 기여
- 잡초매트 지원으로 농지의 제초제 사용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예방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 :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신청
 - 2025. 3. ~ 11. : 환경친환경 농자재 공급 및 보조사업 집행
 - 2025.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2023	- 농 가 수 : 12호 - 지급면적 : 6.2ha - 지급금액 : 28,279천원
2024	- 농 가 수 : 11호 - 지급면적 : 2.2ha - 지급금액 : 9,563천원
2025	- 농가수 : 6호/ 사업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279	28,279	-	-	
2024	9,563	9,563	-	-	
2025	9,563	618	-	8,945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고추재배 농지
사업규모	2,640 m ²		
사업목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고추 생산기반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2호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1,250	33,000	24,250	0	8,750	1,750	
국비	12,500	13,200	9,700	0	3,500	700	
도비	0	0	0	0	0	0	
시비	18,750	19,800	14,550	0	5,250	1,050	
기타	31,250	33,000	24,250	0	8,750	1,75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750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경정(25,000원*2,640m ² *50%) -기정(25,000원*1,940m ² *50%)	= 8,750	

□ 예산요구 사유

- 고추 재배농가의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를 통해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 : 사업 수요조사 실시
 - 2024. 12. : 사업신청
 - 2025. 4. ~ 2025. 5.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5. 5. ~ 2025. 11.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
 - 2025. 11. ~ 2025.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가수 : 1농가 - 지급금액 : 8,250천원 - 지원면적 : 660㎡
2024	- 농가수 : 3농가 - 지급금액 : 27,650천원 - 지원면적 : 2,212㎡
2025	- 농가수 : 3농가 - 지급금액 : 33,000천원 - 지원면적 : 2,640㎡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500	8,250	-	8,250	
2024	31,250	27,650	-	3,600	
2025	24,250	-	-	24,25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조민경	전화	4279
-----	-------	------------	-----	----------	----	------

선택형맞춤농정(전환사업)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2개소		
사업목적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의 기반확충 및 현대화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력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65,000	1,445,967	1,270,000	0	175,967	980,967	
국비	0	0	0	0	0	0	
도비	93,000	433,790	381,000	0	52,790	340,790	
시비	372,000	1,012,177	889,000	0	123,177	640,177	
기타	465,000	1,445,967	1,270,000	0	175,967	980,967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5,967	
선택형 맞춤농정 (전환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선택형맞춤농정사업 : 경정(1,445,967,000원*2개소*50%) -기정(1,270,000,000원*2개소*50%)	= 175,967	

□ 예산요구 사유

- 지역특화품목 집중육성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량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선택형맞춤농정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25. 2. ~ 11. : 사업추진
 - 2025.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3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시포도연구회, 김포시배연구회) - 집행액 : 360,000천원 - 내 용 : 인삼생산시설, 포도생산시설 및 장비, 배 생산시설 및 장비 등 지원
2024	- 사업량 : 3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시포도연구회, 김포시사과연구회) - 집행액 : 465,000천원 - 내 용 : 인삼생산시설, 포도생산시설 및 장비, 사과생산시설 지원
2025	- 사업량 : 2개소/사업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0,000	360,000	-	-	
2024	465,000	465,000	-	-	
2025	1,270,000	-	-	1,270,00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축산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476농가			
사업목적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 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82,500	370,624	370,623	0	1	288,124	
국비		0				0	
도비	16,500	111,187	111,187			94,687	
시비	66,000	259,437	259,436		1	193,437	
기타	55,000	247,082	247,082			192,082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보험료 : 경정(370,624,000원)-기정(307,623,000원) =	1	

□ 예산요구 사유

○ 자연재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조기 안정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내시 변경(시비 1천원 증액)에 대해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02. : 사업 안내
 - 2025.02.~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1,874,531두(수) - 집행액 : 64,629천원
2024	- 사업량 : 1,049,190두(수) - 집행액 : 82,314천원
2025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705	64,629	-	76	
2024	82,500	82,314	-	186	
2025	370,623	-	-	370,623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낙농·육우 사육 농가
사업규모	6,932두/개소/kg/명		
사업목적	깨끗한 목장 환경 개선 및 젖소 개량과 산유능력 향상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07,250	240,700	162,800	67,900	10,000	133,450	
국비		0				0	
도비	21,450	72,210	48,840	20,370	3,000	50,760	
시비	85,800	168,490	113,960	47,530	7,000	82,690	
기타	90,850	215,700	137,800	67,900	10,000	124,85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시설개선사업 : 경정(156,900,000원)-기정(146,900,000원)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사육환경 개선,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환경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낙농육우산업의 축산 기반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시설개선사업 분야 사업량 변경 내시(저지 소 사육환경 개선 사업 1개소 추가)로 인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2025.04.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예산액 : 139,800천원 - 사업량 : 5,027두/개소/대 - 집행액 : 139,098천원
2024	- 예산액 : 107,250천원 - 사업량 : 5,648두/개소/대 - 집행액 : 107,241천원
2025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9,800	139,098	-	702	
2024	107,250	107,250	-	-	
2025	230,700	-	-	230,70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03
-----	-----	----------	-----	----------	----	------

가금 및 기타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가금 및 기타가축 사육 농가
사업규모	장비 34대		
사업목적	가금 및 기타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 생산 및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01,250	162,600	101,250	0	61,350	61,350	
국비		0				0	
도비	30,375	48,780	30,375		18,405	18,405	
시비	70,875	113,820	70,875		42,945	42,945	
기타	101,250	162,600	101,250		61,350	61,35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1,350	
가금 및 기타가축 경쟁력 강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시설개선사업(농가 자율사업) : 경정(162,600,000원) -기정(101,250,000원) =	61,350	

□ 예산요구 사유

- 축사 내 재난 방지, 환기시설, 난방시설 등 환경을 개선하여 폐사율 감소를 도모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2025.04.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예산액 : 55,800천원 - 사업량 : 15개소 - 집행액 : 55,448천원
2024	- 예산액 : 101,250천원 - 사업량 : 14개소 - 집행액 : 100,479천원
2025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800	55,448	-	352	
2024	101,250	100,479	-	771	
2025	101,250	-	-	101,25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03
-----	-----	----------	-----	----------	----	------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27개소		
사업목적	축산농가 악취·분뇨 문제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분뇨 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 제3호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20,000	380,000	310,000	0	70,000	160,000	
국비		0				0	
도비	44,000	114,000	93,000		21,000	70,000	
시비	176,000	266,000	217,000		49,000	90,000	
기타	220,000	380,000	310,000		70,000	160,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0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퇴비살포기 : 경정(20,000,000원*13개소*50%) (7개소 증액) - 기정(20,000,000원*6개소*50%) =	70,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환경법규 준수 및 악취민원 해소
- 가축분뇨 처리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문제 해소 및 분뇨처리 부담 경감

□ 예산증감 사유

- 퇴비살포기 사업량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 증액 : 6개소 → 13개소 (7개소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03. : 추진계획 수립 및 공모
 - 2025.03.~2025.04. :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콤포스트(65t) 1개소 - 스키드 로더 4개소
2024	- 콤포스트(65t) 2개소 - 통풍식 퇴비사 개선 1개소 - 장착형 퇴비 교반기 4개소
2025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0,000	145,000	-	25,000	
2024	220,000	180,000	-	40,000	
2025	310,000	-	-	310,00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04
-----	-----	----------	-----	----------	----	------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옥수수, 수단그라스, 연맥 등 조사료 종자 11,000kg		
사업목적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5,466	19,800	13,204	0	6,596	4,334	
국비	7,733	9,900	6,602		3,298	2,167	
도비		0			0	0	
시비	7,733	9,900	6,602		3,298	2,167	
기타	10,304	13,200	8,803		4,397	2,896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596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종자구입비 : 경정(19,800,000원)-기정(13,204,000원)	= 6,596	

□ 예산요구 사유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로 조사료 수입대체 및 축산농가 소득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증가(7,336kg → 11,000kg)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2.~2025.03.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8,000kg - 집행액: 19,200천원
2024	- 사업량: 8,593kg - 집행액: 15,466천원
2025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200	19,200	-	-	
2024	15,466	15,466	-	-	
2025	13,204	-	-	13,204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양봉농가
사업규모	품질검사 44회, 양봉전용사료 7,000kg, 면역증강제 20개, 소초광 180박스, 전면왕농 180개, 여왕벌 육성지원 1개소		
사업목적	꿀벌에 의한 화분매개로 과수 등 타 산업 및 자연생태계 보호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2,450	40,574	42,450	0	-1,876	-1,876	
국비		0				0	
도비	12,735	12,172	12,735		-563	-563	
시비	29,715	28,402	29,715		-1,313	-1,313	
기타	37,090	35,214	37,090		-1,876	-1,876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76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소초광 : 50,000원*180박스*50% = 4,500 · 전면왕농 : 10,000원*180개*50% = 900 · 밀원수묘목 : 경정(0원)-기정(150,000원) = -150 · 품질검사 : 경정(3,374,000원)-기정(3,300,000원) = 74 · 자연화분 : 경정(28,000,000원)-기정(32,000,000원) = -4,000 · 면역증강제 : 경정(200,000원)-기정(5,000,000원) = -4,800 · 여왕벌 육성 : 경정(3,600,000원)-기정(2,000,000원) = 1,600		

□ 예산요구 사유

- 양봉농가에 자연화분, 품질검사 등 경상적 지원을 통해 양봉농가들의 경영 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2025.04.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양봉농가 밀원수 묘목 200수, 품질검사 30회, 자연화분 3,339kg 지원
2024	양봉농가 밀원수 묘목 200수, 품질검사 62회, 자연화분 7,550kg, 여왕벌 육성 1개소 지원
2025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100	14,656	-	444	
2024	42,450	37,368	-	5,082	
2025	42,450	-	-	42,45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03
-----	-----	----------	-----	----------	----	------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양봉농가
사업규모	309대/개/개소		
사업목적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6,100	19,800	16,100	0	3,700	3,700	
국비		0				0	
도비	4,830	5,940	4,830		1,110	1,110	
시비	11,270	13,860	11,270		2,590	2,590	
기타	16,100	19,800	16,100		3,700	3,7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700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양봉전동카 : 3,000,000원*1대*50% = 1,500 · 벌꿀이송펌프 : 1,100,000원*1대*50% = 550 · 간이창고 : 400,000원*1개소*50% = 200 · 저온저장고 : 7,000,000원*2개소*50% = 7,000 · 꿀벌소분기 : 1,500,000원*1개*50% = 750 · 상차용리프트 : 경정(1,500,000원)-기정(0원) = 1,500 · EPP벌통 : 경정(7,500,000원)-기정(14,250,000원) = -6,750 · CCTV : 경정(800,000원)-기정(1,600,000원) = -800 · 말별퇴치장비 : 경정(0원)-기정(250,000원) = -250		

□ 예산요구 사유

- 양봉농가에 현대화된 시설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품질의 양봉 산물 생산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2025.04.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예 산 액 : 24,130천원 - 집 행 액 : 24,130천원 - 집행잔액 : 0천원
2024	- 예 산 액 : 16,100천원 - 집 행 액 : 16,100천원 - 집행잔액 : 0천원
2025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130	24,130	-	-	
2024	16,100	16,100	-	-	
2025	16,100	-	-	16,10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03
-----	-----	----------	-----	----------	----	------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퇴비살포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40ha			
사업목적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퇴비살포 지원대상 확대와 가축분뇨 퇴비 품질제고를 통한 화학비료 대체 및 이용 촉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2,000	6,000	0	6,000	12,000	
국비		0				0	
도비		3,600	1,800		1,800	3,600	
시비		8,400	4,200		4,200	8,4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퇴비살포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퇴비살포비 지원 : 경정(300,000원*40ha)-기정(300,000원*20ha) =	6,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축분뇨 퇴비의 농경지 환원으로 경축순환농업 기반 조성
- 가축분 퇴비 품질제고를 통한 화학비료 대체 및 이용 촉진

□ 예산증감 사유

- 퇴비살포 사업량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 증액 : 20ha → 40ha (20ha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03. : 추진계획 수립 및 공모
 - 2025.03.~2025.04. :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6,000	-	-	6,00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04
-----	-----	----------	-----	----------	----	------

축산분야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기간	2025. 3.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으로 기초생활권 보장 및 복지향상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2회 추경 요구액 (D)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	본예산 (C)			
계	0	15,000	0	15,000	15,000	
국비		0			0	
도비		4,500		4,500	4,500	
시비		10,500		10,500	10,500	
기타		15,000		15,000	15,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축산분야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비 : 30,000,000원*1개소*50% =	15,000	

□ 예산요구 사유

-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기초생활권 보장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2025.04.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5.~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03
-----	-----	----------	-----	----------	----	------

사회적 배려 유·청소년 낙농체험 지원

사업기간	2025. 3.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낙농체험 목장
사업규모	10회		
사업목적	사회적 배려대상 유·청소년의 낙농체험을 통한 심신안정 및 낙농체험 목장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신소득 창출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1,760	0	0	11,760	11,760	
국비		0				0	
도비		5,880			5,880	5,880	
시비		5,880			5,880	5,880	
기타		0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760	
사회적 배려 유·청소년 낙농체험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낙농체험 비용 지원 : 1,176,000원*10회	= 11,760	

□ 예산요구 사유

- 사회적 배려대상 유·청소년의 낙농체험을 통한 심신안정 및 자신감 고취
- 낙농 체험 목장 활성화를 통한 농가 신소득 창출 및 경영안정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2025.04.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03
-----	-----	----------	-----	----------	----	------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4농가		
사업목적	축사 지붕 등 축사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난 회복 및 농외소득 창출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 제1항
		제22조(행정 및 세제·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50,000	0	0	150,000	150,000	
국비		0				0	
도비		75,000			75,000	75,000	
시비		75,000			75,000	75,000	
기타		350,000			350,000	350,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 지원 : 125,000,000원*4농가*30% =	150,000	

□ 예산요구 사유

- 전력 판매를 통한 추가 소득 확보로 축산업 경영 안정
-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농업 전환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4.~2025.05. : 추진계획 수립 및 공모
 - 2025.05.~2025.06. :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 2025.06.~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04
-----	-----	----------	-----	----------	----	------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소 사육 농가
사업규모	350두		
사업목적	거래 소 검사 채혈비를 채혈요원(김포시 공수의사)에 지급하여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사전탐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8,800	5,250	30,000	0	-24,750	-23,550	
국비	8,640	1,575	9,000		-7,425	-7,065	
도비	3,024	0				-3,024	
시비	17,136	3,675	21,000		-17,325	-13,461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750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지원 : 경정(15,000원*350두)-기정(15,000원*2,000두) =	-24,750	

□ 예산증감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결핵 및 브루셀라 예찰체계 개편으로 인한 사업물량 감소
- 위험도 기반 예찰 체계로 개편
 - (기존) 일제검사 2,000두/년 실시
 - (변경) 발생다발 시군 위주 예찰 집중, 비위험 시군 검사물량 감소 ※ 김포시 350두/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기본계획 수립
 - 2025.01.~2025.12. : 통계 예찰 목적 검사 실시
 - 2025.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일제검진 채혈 1,900두
2024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일제검진 채혈 1,816두
2025	소 예찰 목적 채혈 실시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	28,775	-	1,225	
2024	28,800	27,115	-	1,685	
2025	30,000	-	-	30,00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가축 전염병 검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공수의사 6명, 시료배송 240회		
사업목적	- 검사시료 배송비 : 수원시 위생시험소까지 질병검사 시료를 빠르게 배송하여 방역업무 신속 대처 - 공수의사 동원수당 : 축종별 임상수의사를 방역업무 등에 활용하여 전문성 향상 및 방역효과 극대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59,760	57,000	50,000	0	7,000	-2,7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9,760	57,000	50,000		7,000	-2,76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	
가축 전염병 검사	201-01 사무관리비	· 시료배송비 : 경정(60,500원*192회)-기정(60,500원*77회) =	7,000	

□ 예산요구 사유

-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사전 질병검사 및 질병의 예찰·예방을 위한 공수의 동원실시

□ 예산증감 사유

- 검사시료 건수 증가로 예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12. : 공수의 위촉 및 기본계획 수립
 - 2025.01.~2025.12. : 사업 진행(공수의 동원 방역활동, 시료배송비 집행)
 - 2025.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공수의사 동원수당 33,392천원, 시료배송 215건 집행
2024	공수의사 동원수당 8,210천원, 시료배송비 190건 집행
2025	공수의사 동원수당 20,787천원, 시료배송비 61건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1,920	47,496	-	14,424	
2024	59,760	20,706	-	39,054	
2025	50,000	24,656	-	25,344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농업8급 이원택	전화	4313
-----	-----	------------	-----	----------	----	------

전염병 감염축 처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5두		
사업목적	가축전염병 감염축·의심축의 신속한 랜더링처리(열처리 폐기)로 전염병 확산 차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② 시장은 사전 방역을 통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5,550	7,500	4,500	0	3,000	1,95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550	7,500	4,500		3,000	1,9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	
전염병 감염축 처리	201-01 사무관리비	· 소 랜더링 처리 : 300,000원*25두	= 7,500	
	401-01 시설비	· 소 랜더링 처리 : 경정(0원) - 기정(4,500,000원)	= -4,500	

□ 예산요구 사유

- 2종 가축전염병, 살처분, 단순 검진 중 폐사된 가축의 효율적 처리(랜더링)를 통해 매몰지 생성 지양 등 환경오염과 전염병 전파 예방
- 시설비 → 사무관리비 통계목 변경

□ 예산증감 사유

- 2월 양주시 ASF 발생 당시 도축장 역학 관련 지육 폐기로 예산 소진, 2025년도 사업비 부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추진계획 수립
 - 2025.01.~2025.12. : 연중 사업 추진(전염병 발생 시 용역 집행)
 - 2025.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ASF 발생 역학관련 축산물 랜더링 1개소
2024	- ASF 발생 역학관련 축산물 랜더링 1개소 - 구제역 백신 접종 후 폐사 소 랜더링 1두
2025	ASF 발생 역학관련 축산물 랜더링 1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50	3,824	-	226	
2024	5,550	5,342	-	208	
2025	4,500	4,451	-	49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성립전)

사업기간	2025. 1. ~ 2025. 6.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소독약 600kg		
사업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5,000	0	0	15,000	1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000			15,000	15,000	특교세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06-01 재료비	·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 25,000원/포*600kg	= 15,000	

□ 예산요구 사유

- 전국 고병원성AI,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관련, 김포시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용 소독약 구입비용 수립

□ 예산증감 사유

- 전국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지역 간 전파 차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성립 전 예산 수립 후 추경 예산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2.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 2025.03. : 성립 전 예산 수립
 - 2025.03.~2025.05. : 사업 추진
 - 2025.06.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5,000	-	-	15,00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익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사업규모	12개소		
사업목적	안전한 축산물 제공 및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하기 위해 자체 위생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4,800	9,600	4,800	3,200	1,600	4,800	
국비		0	0	0	0	0	
도비	2,400	4,800	2,400	1,600	800	2,400	
시비	2,400	4,800	2,400	1,600	800	2,4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600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 경정(9,600,000원)-기정(8,000,000원) =	1,600	

□ 예산요구 사유

-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마련 및 골목상권 내 정육점 보호하고자 축산물 위생 관리업체를 통한 구충·구서, 정기 소독 등 위생 상태 점검 및 개선 방향 컨설팅과 축산물 위생관리 소모품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증가로 인한 증액 : 10개소 → 12개소(2개소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추진계획 수립
 - 2025.02.~2025.03. :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및 선정
 - 2025.03.~2025.12. : 사업 추진
 - 2025.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2023	- 사업량: 4개소 - 집행액: 3,200천원
2024	- 사업량: 6개소 - 집행액: 4,800천원
2025	- 신청내역: 12개소 - 집행액: 없음(4/4분기 집행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00	3,200	-	3,200	
2024	4,800	4,800	-	-	
2025	9,600	-	-	9,60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농업9급 김효건	전화	4325
-----	-----	------------	-----	----------	----	------

유실·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대		
사업목적	유기동물 포획차량의 유지관리로 유기동물 관련 민원의 효율적 대응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6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 상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위 부서를 차량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7,000	8,000	7,000	0	1,000	1,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000	8,000	7,000		1,000	1,0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	
유실·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차량유지관리비 : 경정(8,000,000원*1대)-기정(7,000,000원*1대) =	1,000	

□ 예산요구 사유

-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민원 처리에 필요한 차량 운영

□ 예산증감 사유

- 차량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증가
- 하반기(2025년 5월 ~ 2025년 8월) 포획반 확대 운영으로 인한 차량 유류비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사업 진행(연중 계속 사업)
 - 2025.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유기동물 포획차량 운영 및 관리(유류비 및 점검수리비 집행)
2024	유기동물 포획차량 운영 및 관리(유류비 및 점검수리비 집행)
2025	유기동물 포획차량 운영 및 관리(유류비 및 점검수리비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000	7,000	-	-	
2024	7,000	7,000	-	-	
2025	7,000	2,616	-	4,384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7급 고나영	전화	4322
-----	-----	------------	-----	----------	----	------

동물보호관리(자체)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유실·유기동물 포획 및 구조용 소모품 구입		
사업목적	동물보호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및 구조 물품구입을 통한 효율적 대처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제4조 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② 시장은 동물보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7,700	12,400	11,900	0	500	4,7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700	12,400	11,900		500	4,70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	
동물보호관리 (자체)	201-02 공공운영비	· 동물보호관리 업무용 핸드폰 통신비 : 50,000원*10개월	= 500	

□ 예산요구 사유

- 유실·유기동물 포획반 운영에 따른 업무용 핸드폰 통신비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하반기(2025년 5월 ~ 2025년 8월) 포획반 확대 운영으로 인한 업무용 핸드폰 통신비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사업 진행(연중 계속 사업)
 - 2025.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유기동물 포획 틀(4개), 바디캠(3대), 유기동물 포획용 미끼 구입 및 동물보호 홍보물 등 제작
2024	- 들개출몰 주의·동물학대 금지 증 현수막 제작 - 유기동물 포획 틀(4개), 유기동물 포획용 미끼 등 구입
2025	- 동물보호법 관련 팸티켓 홍보 포스터 및 동물 유기금지 현수막 제작 - 유기동물 포획용 도구(그물망 2개 등) 구입 - 유기동물 포획반 업무용 핸드폰 통신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375	8,375	-	-	
2024	7,700	7,700	-	-	
2025	11,900	3,418	-	8,482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7급 고나영	전화	4322
-----	-----	------------	-----	----------	----	------

개사육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6개소			
사업목적		개식용농가 폐업 지원을 통한 개식용 조기 종식 도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503,120	0	0	1,503,120	1,503,120	
국비		751,560			751,560	751,560	
도비		225,468			225,468	225,468	
시비		526,092			526,092	526,092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3,120	
개사육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사육시설 감정평가비 : 2,000,000원*6개소	= 12,000	
	301-14 기타보상금	· 개사육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비 : 234,780,000원*6개소	= 1,408,680	
	401-01 시설비	· 개사육농가 시설물 철거비 : 13,740,000원*6개소	= 82,440	

□ 예산요구 사유

- 개사육농가(6개소) 폐업 및 전업 지원을 통한 개식용 조기 종식 도모
- 폐업 및 전업 개사육농가 대상 폐업이행 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등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른 신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일자	2025.11.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03.~2024.08. : 개사육농가 전·폐업 이행계획서 접수
 - 2024.05. : 개사육농가 운영 현황 전수조사(25개소)
 - 2025.02. : 개사육농가 6개소 폐업
 - 2025.07.~2025.12. : 감정평가, 철거대행 등 개사육농가 지원
 - 2025.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7급 황재하	전화	4324
-----	-----	------------	-----	----------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업진흥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사업기간	2025. 7.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하성로 58-155
사업규모	2명		
사업목적	농기계 임대업의 전문성 확보 및 쾌적한 환경정비로 농업인 만족도 향상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18,970	0	0	18,970	18,97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8,970			18,970	18,970	
기타		0				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970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농기계임대사업소 민원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 기본급 : 11,400원*8시간*1명*132일 - 유급휴일수당 : 91,200원*1명*27일 - 시간외근무수당 : 17,100원*125시간 . 업무보조원 4대보험료 : 16,638,300원*14%	= 12,039 = 2,463 = 2,138 = 2,330	

□ 예산요구 사유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예약·결재 담당업무 공무원 정년퇴직으로 인한 기간제 채용

□ 예산증감 사유

-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예약·결재 기간제 신규채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 : 농기계임대사업소 공무원 퇴직 결정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수립
 - 2025.07.~2025.12. : 기간제근로자 채용 임대사업소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기계팀장 김종무	담당자	공업7급 이선용	전화	4335
-----	-------	-----------	-----	----------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 업 설 명 서

기술지원과



식량작물 특성화 시험연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식량작물 실증시험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및 신소득작목 육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6조제1항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0,000	50,000	30,000	0	20,000	4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	50,000	30,000		20,000	4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	
식량작물 지역특성화 시험연구	201-01 사무관리비	. 식량작물 특성화 상품 브랜드 포장 및 디자인 개발 등 : 경정(20,000,000원*2품목)-기정(20,000,000원*1품목)	= 20,000	

□ 예산요구 사유

- 현재 경기도 및 김포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외래품종 추청벼의 공급 중단('28년부터 공급 중단 예정)에 따라 김포 지역적응 신품종 벼 '한가득' 전용 브랜드 포장 및 디자인 개발로 지속적인 김포금쌀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이미지 홍보
-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로 쌀 소비 및 농가 소득 증가

□ 예산증감 사유

- 김포 지역 적응 신품종 벼 '한가득' 확대보급에 따른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홍보예산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4 ~ 5. : 한가득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수립
 - 2025. 6. ~ 8. : 한가득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 2025. 9 ~ 12. : 한가득 쌀 소비자 판매 및 홍보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역적응 선발 품종 실증시험(한가득) : 3개소 0.6ha - 예찰답, 대곶면 대능리, 월곶면 조강리 등 농가 2개소 ○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실증시험(월곶면 조강리 일원) - 저탄소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 수확량, 미질향상, 도복경감 등 효과 실증 ○ 벼 이모작 실증시험(고촌읍 태리 일원) - 쌀가루 가공용 벼와 밀 이모작 식재로 농가 소득향상 및 적정 작부체계 실증
2024	○ 김포 토종종자 ‘자광미’ 복원 및 활용 - 자광미 순계선발을 위한 채종재배 : 0.1ha, 생산량 300kg/10a(조곡) - 자광미 유효성분 분석(현미, 백미 등) : 안토시아닌,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등 기능성 성분 함유 확인 - 김포문화재단 주최 자광미 소재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추진 : 시민참여 모내기, 추수, 탈곡 수작업 등 ○ 김포 대표 벼 품종 ‘한가득’ 확대 보급 - ‘24년 한가득 재배면적 : 시범사업 2개소 등 40ha - 출수기 중간평가 및 수확 후 식미평가 - 농업인의 날 등 한가득 쌀 홍보 및 로컬푸드 판매 - ‘25년 종자보급 등
2025	○ 김포 토종종자 ‘자광미’ 확대 및 활용 계획 - 2년차 자광미 종자 복원 및 확대재배 : 10a(1,000㎡) - 자광미 소포장 상품화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 자광미 활용 상품화 개발 연구(주류, 식초 등) - 소비자 문화예술 활동 및 가공식품 만들기 교육 등 ○ 김포 대표 벼 품종 ‘한가득’ 확대 보급 - ‘25년 한가득 벼 확대 재배 : 시범사업 3개소 등 150 ~ 200ha - 한가득 종자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 협약기관 : 다자간협약(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개 기관 및 단체) · 계약물량 : ‘26년도 재배용 10톤(200ha 분량) · 내 용 : 한가득 종자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발전방안 토의 등 - ‘한가득쌀’ 발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한가득 품종 맞춤형 재배법 정립 - 한가득 쌀 브랜드 포장 및 디자인 개발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	15,000	-	-	
2024	10,000	10,000	-	-	
2025	30,000	216		29,784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세영	전화	4362
-----	-------	------------	-----	-----------	----	------